

의안번호	제 214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3월 일 (제 268 회)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14
------------	-----

제출연월일 : 2008. 2. 2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함. (안 제2조)
-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함. (안 제4조)
-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 제7조)

-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안 제8조)
-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9조)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국제 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 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의 제의를 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 교육·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교육·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②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교육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강구한다.

③상호방문 시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지역·교육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단체대표 등을 상호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등) ①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제8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결연의 취소)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부칙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6호)

제15조5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개정 2005.3.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